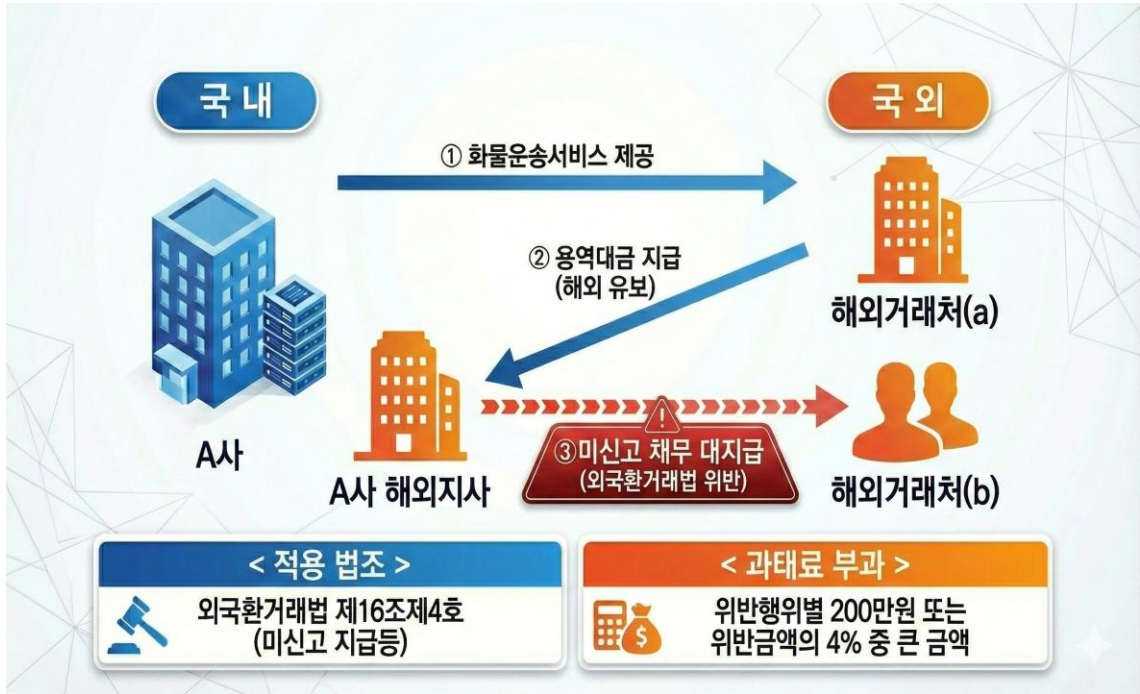


별첨 1: 2025년 관세청이 적발한 외국환거래법 주요 위반사례

1. 외화채권 미회수 (A사)



< 위반 내용 >

- A사는 복합 운송서비스업체로 해외에 법인과 지사를 두고 영업 중
- A사의 해외지사는 현지 특성상 현금거래 관행에 따라 본사의 대외채권을 회수하거나 본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까지 수행
- 즉, A사는 해외거래처(a)에 제공한 화물운송서비스의 용역대금(대외채권)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지사에 유보해 놔다가,
- A사가 또 다른 해외거래처(b)에 지급할 채무가 생기면 해외지사에 유보해 놓은 현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음

< 위반 법조 >

-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
- 과태료부과: 위반행위별 200만원 또는 위반금액의 4% 중 큰 금액

2. 변칙 거래 (B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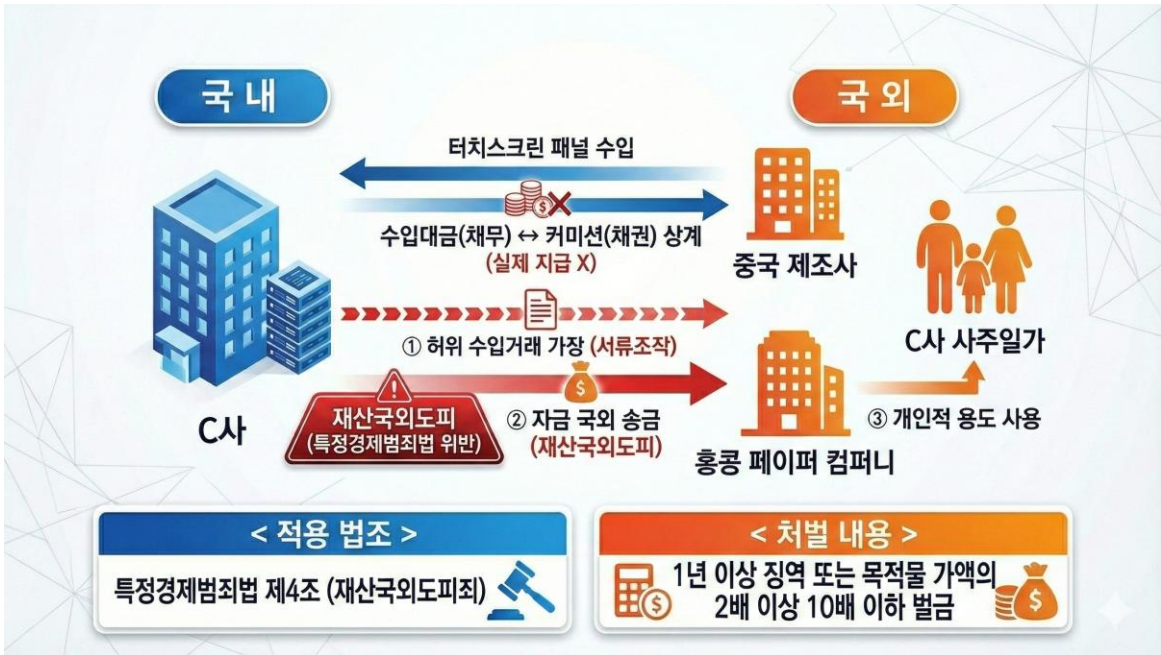
< 위반 내용 >

- B사는 글로벌 PC게임 공급업체로 게임홍보를 목적으로 러시아, 튀르키예, 싱가포르, 태국에 있는 PC게임의 파워 유저에게 홍보 용역을 의뢰
- 의뢰를 받은 해외 게임유저는 온라인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B사의 게임을 홍보하고 용역대가는 현금 등 지급수단이 아닌 B사의 PC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(게임머니)로 지급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음

< 위반 법조 >

-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
- 과태료부과: 위반행위별 200만원 또는 위반금액의 4% 중 큰 금액

3. 재산 국외도피 (C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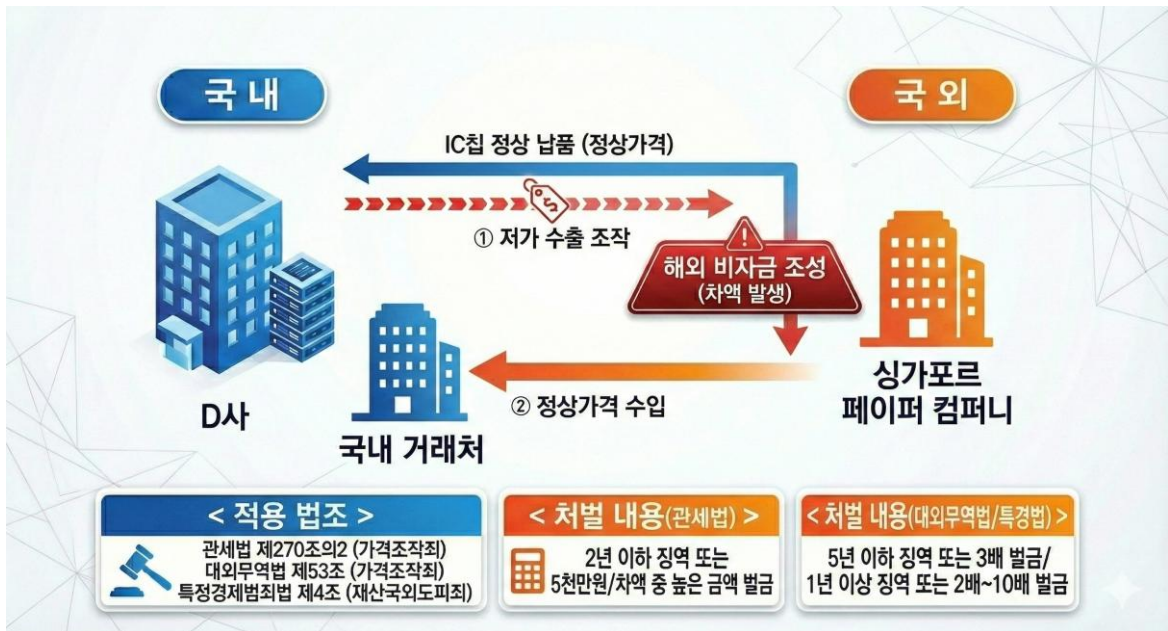
< 위반 내용 >

- C사는 중국 제조사의 터치스크린 패널을 수입하여 국내 전자회사에 판매하는 에이전트 역할 수행
- C사는 중국 제조사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할 의무(채무)가 발생하고, 중국 제조사로부터 에이전트 판매 커미션 받을 수 있는 권리(채권)가 발생
- C사는 중국 제조사와 수입대금(채무)과 커미션비용(채권)을 상계하기로 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할 자금을 상쇄 →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음
- 한편, C는 홍콩에 사주일가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중국 제조사와의 수입거래를 홍콩 페이퍼 컴퍼니와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
-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C사의 자금을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 이동시킨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

< 적용 법조 >

-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: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키는 범죄(1년 이상 징역 또는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)

4. 재산 국외도피 (D사) ※ 본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.



< 위반 내용 >

- D사는 국내 거래처에 IC칩을 납품하는 공급계약을 체결
- D사는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, 국내 거래와 전혀 상관없는 수출입 무역을 끼워 넣음*
* D사 > 국내 거래처 ⇒ D사 > 페이퍼컴퍼니 > 국내거래처
- 이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에 IC칩을 수출하는 가격은 저가로 조작하고 국내 거래처는 정상가격으로 수입하게 하여 그 차액으로 해외 비자금 조성

< 적용 법조 >

- 관세법 제270조의 2: 부당한 재물이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범죄(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, 물품원가 조작차액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)
- 대외무역법 제53조: 외화도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범죄(5년 이하 징역 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해당 벌금)
-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: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키는 범죄(1년 이상 징역 또는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)